

- 2014년도 제1회 웅진군 지방공무원 -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14년도 제1회 웅진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웅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구 분			선발예정인원	비고	
		직 렬	직 류	직 급			
제1회 임 용 시 험 (7.19)	공개경쟁 임용시험	총 계			18명		
		보건진료	보건진료	8급	2명		
		행 정	일반행정	일 반	9급	10명	
				장 애	9급	1명	
				저소득	9급	1명	
		공 업	일반기계	9급	1명		
		시 설	일반토목	9급	2명		
		시 설	건 축	9급	1명		

②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시험과목

직렬	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u>보건진료</u>	<u>보건진료</u>	8급	<u>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u>
행정	일반행정	9급	공통(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5):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공업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	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국조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시험시간: 100분(10:00 ~ 11:40)

③ 시험방법

1.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1택형)
2.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④ 응시자격

1.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⑤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2. 응시연령

시험명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9급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3. 거주지 제한

시험명	직렬	직류	직급	거주지 제한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보건진료	보건진료	8급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행정	일반행정	9급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용진군으로 되어 있거나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용진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공업	일반기계		
시설	일반토목	건축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군청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자격 및 학력제한

시험명	직렬	직류	직급	자격제한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보건진료	보건진료	8급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014.7.7 ~ 7.13 <휴일포함> ※ 취소기간 : 7.7 ~ 7.13	필기시험	7.14	7.19	7.29
		면접시험	7.29	9.12	9.17

※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응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구 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기간	2014.7.7 ~ 7.13 <휴일포함>
접 수 처	웅진군청 6층 중회의실
접수방법	방문접수(※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접수처배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2매(3.5cm×4.5cm), 원판보관 ②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상당의 웅진군 수입증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됨.(※원서접수 시 증명서 제출) ③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사본제출)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 ⑤ 장애인증명서(원본지참 / 사본제출) 또는 진단서 1부(※장애인구분모집 대상자) ⑥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⑦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화·웅진군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접수된 일체의 서류 반환 불가)
 -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별첨2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 및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대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2. **채용목표:** 30%

- 채용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는 버립니다.

3.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합니다.(※하한성적: 합격선 -3)

8 장애인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1. **대 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2.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9 가산특전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적용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 산 점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직 렬 별 가 산 점	행정직분야 기술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 1개]+[직렬별 가산점 1개]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통 · 정 보 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 무 관 리 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9급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5%
기술직군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첨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일 해당자격증의 원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합니다.

10 응시자 주의사항

1.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또는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 거주지 제한 미 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 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진군 안전행정과(행정팀 ☎032-899-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제도 변경안내(공개경쟁임용시험)

1.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초 면접시험과 최종 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임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2. 추가합격제도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